



성실하다!
확실하다!

믿음직한

1·나 홍우열

후보자 정보공개자료

고흥군의회의원선거 (고흥군나선거구)

1. 인적사항

기호	소속정당	후보자성명	성별	생년월일(세)	직업	학력	경력
1-나	더불어민주당	홍우열	남	1968.01.26. (58세)	무직	별교상업고등학교 졸업	(전)고흥 동강우체국 근무

2.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

재 산 상 황 (천 원)					병 역 사 항		
계	후보자	배우자	직계존속	직계비속	후보자	배우자	18세 이상 직계비속
451,013	104,203	346,810	모: 고지거부	장남:고지거부 차남:고지거부 삼남:없음	기타 (면제)	-	-장남:육군 병장(만기전역) -차남:육군 병장(만기전역) -삼남:육군 병장(만기전역)

3. 최근 5년간 세금납부·체납실적 및 전과기록

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(천원)				후 보 자 전과기록
구 분	납세액	세납내역		
		체납액 누계	현 체납액	
계	9,603	-	-	해당없음
후 보 자	7,882	-	-	
배 우 자	800	-	-	
직계존속	-	-	-	
직계비속	921	-	-	

4. 소명서

뜻심, 성심, 열심 홍우열입니다!

존경하는 군민여러분

더불어민주당 군의원 후보 홍우열 인사드립니다.

32년 동안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며 살았습니다.

15년의 자율방범대 활동과 15년의 라이온스 회원으로

지역발전과 봉사라는 명제를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.

이제 저는 새로운 봉사의 길에 나서며 군민여러분께 선택받고자 합니다.

성심으로, 열심으로, 뜻심으로

군민여러분의 마음을 듣고, 전하고, 이뤄내겠습니다.

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제 평생의 삶처럼

앞으로도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며 해결해 나가는

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군의원이 되겠습니다.

**군민여러분의
근심을 덜어드리고
마음을 함께 나누는
내 맘 같은 군의원이 되겠습니다.**

**홍우열에게
일 할 수 있는 기회를주십시오!**

군의원 후보

1·나 홍우열



지역사회와 함께한 시간
 검증된 성실함,
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!

믿음직한 **1·나** 홍우열

검증된 성실함,
한결같은 발걸음

홍우열

지역발전에는 **홍우열!**

篤심

성심

열심

언제나 군민곁에,
변함없는 성실함

홍우열



믿음직한

홍우열이

하겠습니다!

약속은 확실하게 성과는 든든하게 홍우열이 해내겠습니다!

농·축·수산 더 편하게 더 크게!

- **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및 ‘찾아가는 수리 서비스’ 강화**
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를 직접 배달하고 현장에서 수리 해주는 서비스를 대폭 지원하겠습니다.
- **고흥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이 귀촌할 경우,**
농·축·수산 종사 시, 지원사업 확대 및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주민 복지·편의 더 든든하게 따뜻하게!

- **100원 택시 및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**
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이 면사무소나 병원을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- **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우선순위 배정**
노후 농로와 배수로를 전수조사하여 매년 차질 없이 정비
- **가로등 및 마을 CCTV 추가 설치**
범죄 예방과 야간 통행 안전 지대 만들기
- **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방지턱 신설 추진**

지역 특화 개발 더 북적북적 더 활기차게!

- **남양·대서 해안도로 및 수변 공원 조성**
아름다운 득량만 해안을 따라 주민들이 산책하고
관광객이 찾는 힐링 공간을 확충
- **생활 체육 시설 확충**(파크 골프장 등)

뜻심 성심 열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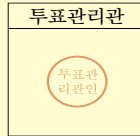
홍우열



약속은 확실하게 성과는 든든하게

고흥군의회의원선거투표
(나 선거구) 동화선거
관리위원회인

1-가	더불어민주당	○○○	
1-나	더불어민주당	홍우열	
○	○○○	○○○	
○	○○○	○○○	



선
취
절
No.

- 홍우열은**
- 도화우체국(전)
 - 동강우체국(전)
 - 과역우체국(전)
 - 동강자율방범대(현)
 - 동강라이온스 회장(현)
 - 더불어민주당 고흥부위원장(현)

믿음직한 1·나 홍우열

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266
전화: 010-3641-4754

이 선거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것입니다